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14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조승환 · 김승수 · 곽규택
이성권 · 조은희 · 김은혜
김소희 · 유용원 · 김상훈
서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예산의 원칙으로 두고 이를 근거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통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되기 위하여는 해당 제도의 운영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한편, 청년세대의 경우 저조한 정치참여율 등을 이유로 우리사회의 주요 재정정책 결정구조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재정정책이 본인 세대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위치에 처해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국가경제의 주축이 되는 청년세대들이 재정정책 결정에 관하여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재정정책이 본인들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참여단 운영 시 청년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향후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92조의2에 따른 세대간 재정보고서

제2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국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 ①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국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이 경우 정부는 국민참여단에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매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예산과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종합한 국민참여예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참여단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국민참여예산제도 및 국민참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예산보고서

제5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세대간 재정보고서의 작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

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국가의 주요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국민참여단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세대간 재정보고서의 작성, 심의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예산참여제도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

정규정은 2028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대간 재정정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최초의 세대간 재
정정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 설></u> ④ ~ ⑪ (생략) <u><신 설></u>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92조의2에 따른 세대간 재정정보고서</u> ④ ~ ⑪ (현행과 같음) <u>제27조의2(국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u> ①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국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이 경우 정부는 국민참여단에 「청년기본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16. (생략) <u><신설></u> <u><신설></u>	<u>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u> <u>③ 정부는 매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립한 예산과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종합한 국민참여예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참여단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④ 그 밖에 국민참여예산제도 및 국민참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 -----. 1. ~ 16. (현행과 같음) <u>17.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예산보고서</u> <u>제92조의2(세대간 재정보고서의 작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국가의 주요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u>
---	---

한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국민참여단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세대간 재정보고서의 작성, 심의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